

##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

보건복지부령 제283호(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) 일부개정 2015. 01. 05. [시행일 2015. 1. 5]

### 제1조(목적)

이 규칙은 「의료법」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(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의 처리 방법,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의 신고, 그 밖에 세탁물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2조(정의)

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[개정 2010.2.1, 2010.12.30 제32호(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)]

1. "의료기관세탁물"이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와 진료받는 환자가 사용하는 것으로서 세탁 과정을 거쳐 재사용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세탁물(이하 "세탁물"이라 한다)을 말한다.

가. 침구류 : 이불, 담요, 시트, 베개, 베갯잇 등

나. 의류 : 환자복, 신생아복, 수술복, 가운 등

다. 리넨류 : 수술포, 기계포, 마스크, 모자, 수건, 기저귀, 그 밖의 리넨류

라. 기타 : 커튼, 씌우개류, 수거자루 등

2. "오염세탁물"이란 세탁물 중 전염성 물질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세탁물을 말한다.

가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환자가 사용한 세탁물과 감염성 병원균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세탁물

나. 환자의 피·고름·배설물·분비물 등에 오염된 세탁물

다. 동물실험 시 감염증에 걸린 동물의 배설물 또는 분비물에 오염된 세탁물

라. 그 밖에 감염성 병원균에 오염된 세탁물

3. "기타세탁물"이란 세탁물 중 오염세탁물 외의 세탁물을 말한다.

4. "일반세탁물"이란 의료기관세탁물 외의 세탁물을 말한다.

### 제3조(세탁물의 보관 및 운반 기준)

의료기관과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를 한 자(이하 "처리업자"라 한다)는 별표 1의 세탁물의 보관 및 운반 기준에 따라 세탁물을 보관하고 운반하여야 한다.

### 제4조(세탁물의 처리)

①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세탁물을 처리하여야 한다.

1. 제6조제1항의 시설 기준에 맞는 세탁물 처리시설에서 자체 처리

2.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

②처리업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세탁물을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정전·단수·기계고장 등의 사유로 위탁받은 세탁물을 기한까지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다른 처리업자에게 재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.

③의료기관과 처리업자는 오염세탁물을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표 6에 따른 증기소독, 끓는물 소독 또는 약물소독 방법으로 소독한 후 세탁하여야 한다.[개정 2010.12.30 제32호(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)]

④의료기관과 처리업자는 별표 2의 세탁물의 처리 기준에 따라 세탁물을 처리하여야 한다.

#### 제5조(세탁금지 세탁물)

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세탁물을 재사용의 목적으로 세탁하거나 처리업자에게 처리를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.  
[개정 2010.2.1]

1. 피·고름이 묻은 붕대 및 거즈
2. 마스크·수술포 등 일회용 제품류
3. 바이러스성 출혈열[신증후군출혈열(유행성출혈열), 황열, 뎅기열, 마버그열, 에볼라열 및 라싸열의 경우에 해당한다]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으로 오염된 세탁물
4. 크로이츠펠트-야콥병(CJD) 및 변종크로이츠펠트-야콥병(vCJD) 확진 또는 의심환자의 중추신경계 조직으로 오염된 세탁물

#### 제6조(시설 기준)

①의료기관은 세탁물을 처리업자에게 전량 위탁하여 처리할 경우 외에는 별표 3의 의료기관의 세탁물 처리시설 및 장비 기준에 맞는 세탁물 처리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.

②처리업자는 별표 4의 세탁물 처리업자의 시설 및 장비 기준에 맞는 세탁물 처리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.

#### 제7조(처리업의 신고 등)

①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별표 4에 따른 시설 및 장비 명세서
2. 작업장 평면도(기계·기구의 배치 내용을 포함한다)

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증명서를 그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처리업자로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변경신고서에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증명서와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[개정 2010.2.1]

1. 대표자 또는 상호
2.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사항

가. 작업장 면적의 증감

나. 중요 세탁기기의 증감

다. 소독시설의 변경

3. 영업장 소재지

④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이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증명서의 뒷면에 적어야 한다.

⑤ 제1항에 따라 처리업자로 신고한 자가 그 영업을 휴업·재개업·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신고서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[개정 2010.2.1]

### 제8조(감염 예방 교육)

① 의료기관과 처리업자는 세탁물 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연 4시간 이상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(인터넷 교육 등을 포함한다)을 하여야 한다. [개정 2010.2.1]

② 의료기관과 처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기록·유지하여야 한다.

③ 의료기관과 처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보건소장이나 관련 단체로 하여금 그 교육을 하게 할 수 있다.

### 제9조(세탁물 처리실적 제출)

의료기관이나 처리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실적보고서나 별지 제4호서식의 세탁물 처리업자 세탁물 처리실적 보고서를 매년 1 월20일까지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.

### 제10조(대장의 작성·비치)

①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류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.

1. 별지 제5호서식의 세탁물 자체처리대장

2. 별지 제6호서식의 세탁물 위탁처리대장

② 처리업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세탁물 수탁처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.

③ 제1항과 제2항의 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
### 제11조(지도 및 보고)

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세탁물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료기관이나 처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·점검하게 할 수 있다.

### 제12조(규제의 재검토)

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감염 예방 교육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[개정 2015.1.5 제283호(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)]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(매 2년이 되는 해의

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[신설 2015.1.5 제283호 (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)]

1. 제5조에 따른 세탁금지 세탁물: 2015년 1월 1일
2. 제6조 및 별표 3에 따른 시설 기준: 2015년 1월 1일

[본조신설 2013.12.31 제228호(행정규제기본법 개정)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)]

부칙 [94-9-27]

- ①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세탁물처리업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당시 보건사회부고시 제90-45호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처리업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업자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. 다만,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.
- ③(의료기관의 세탁물처리시설에 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당시 세탁물처리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.

부칙 [2000-7-7]

- ①(시행일) 이 규칙은 2000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- ②(의료기관세탁물지정처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당시 법률 제6157호 의료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자에 대하여 관할 시·도지사는 2000년 9월 30일까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
- ③(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부칙 [2003.04.10.]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[2007.10.19 제420호]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[2010.2.1 제157호]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[2010.12.30 제32호(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)]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⑩까지 생략

⑪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가목 중 “「전염병예방법」에 따른 전염병환자”를 “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환자”로, “전염성”을 “감염성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라목 중 “전염성”을 “감염성”으로 한다.

제4조제3항 중 “「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」 별표 3”을 “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표 6”으로 한다.

⑬ 및 ⑭ 생략

제3조 생략

부 칙[2013.12.31 제228호(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)]

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[2015.1.5 제283호(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)]

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

별표1 세탁물의보관및운반기준[제3조관련]

별표2 세탁물의처리기준[제4조제4항관련]

별표3 의료기관의세탁물처리시설및장비기준[제6조제1항관련]

별표4 세탁물처리업자의시설및장비기준[제6조제2항관련]

서식1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신고서

서식2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신고증명서

서식2의2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휴업신고서

서식3 의료기관세탁물처리실적보고[ 년도]

서식4 세탁물처리업자세탁물처리실적보고[ 년도]

서식5 세탁물자체처리대장[의료기관용]

서식6 세탁물위탁처리대장[의료기관용]

서식7 세탁물수탁처리대장[처리업자용]